〈'20대 국회에 바란다' 시리즈②〉

'정치감사' 예고된 20대 첫 국정감사,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일 시 | 2016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프 로 그 램〗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15~10:30	등록	
10:30~10:35	개회	
사회 :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10:35~10:55	발제1.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박명호** 동국대 교수
10:55~11:15	발제2. 19대 국정감사를 통해 본 20대 국정감사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11:15~11:25	토론1	**김인영** 한림대 교수
11:25~11:35	토론2	**최창렬** 용인대 교수
11:35~11:50	종합토론	

〖목 차〗

발 제 문

-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09

  박 명 호 (동국대 교수)

- 19대 국정감사를 통해 본 20대 국정감사 ——— 15

  이 옥 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토 론 문

- 토론1 ——— 37

  김 인 영 (한림대 교수)

- 토론2 ——— 41

  최 창 렬 (용인대 교수)

〈'20대 국회에 바란다' 시리즈②〉

'정치감사' 예고된 20대 첫 국정감사,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발 제

[발제 ①]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박 명 호
동국대 교수

1. 국정감사제도의 의의와 근거

행정부와 관료의 법 집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입법부의 활동을 의회의 감독권이며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행정부 감독권 중 하나로서 헌법 제61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 감사 및 조사제도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중 중요한 수단으로서 제헌국회 이후 실시되어 오다가, 1972년 유신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제 13대 국회인 1988년에 16년 만에 국정 감사 및 조사 제도가 부활되어 지금까지 실시되어 오고 있음.

2. 국정감사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우려

현대 사회의 전문화·다양화로 인한 행정부의 독주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권이 국회 본연의 입법 기능과 행정 통제 기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느냐는 의문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음.

예를 들면 2013년 국정감사 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감사가 성과 있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고,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54%였음.

이러한 배경에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거와 같은 "무리한 자료요구와 정쟁(政爭)의 국회파행 그리고 호통국감의 비효율적 국정감사, 대량 증인채택과 특정증인 채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그리고 무리한 증인출석 요구로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마비 시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국정감사제도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함.

3. 전제(前提)와 변명(辨明)

○ 국회와 정당에 대한 편견과 우리의 이해

○ "정치감사"의 논란

- 국회는 정치의 중심으로 사실상 모든 행위와 언급이 정치적인 것임.
- 따라서 국정감사 또한 "정치적"이며 "정치감사"라 부르는 것이 당연함(?)
- 다만 대통령제의 입법부 역할-입법부 감시감독 그리고 견제와 균형-과 '대통령제의 내각제적 운용'에 따른 '정부여당 대(對) 야당 대립의 일상화'는 구별되어야 하고, 전자(前者)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후자(後者)가 많고 그 경계선이 불분명함.

○ "과다 피감기관"의 논란

- 행정부의 전문화 추세와 이에 따른 부처신설과 행정부와 비교하여 전문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의회라는 환경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하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부 감시감독을 위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조정은 필요함.

○ "과잉(過剩) 자료제출 요구"와 "부실(不實) 자료제출 논란"

- 국정감사는 물론 청문회 등 대부분의 경우 행정부와 의회가 각각 상대를 향해 '자료'와 관련하여 상대를 비판하는 이유임.
- 한쪽은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문제이고, 다른 한쪽은 제대로 자료를 주지 않아서 문제라고 함.
- 이는 근본적으로 '국정운영의 동반자'와 '견제와 균형'에 대한 공통인식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시간이 필요함.

4. 국정감사의 문제점

- "하루 평균 감사대상기관수 : 5.79개"
- "하루 20개 이상 기관 감사 : 6회 (정무 1, 미방 2, 교문 3)"
- "25개 기관 국정감사에 7개 기관은 답변기회 없어"
- "피감기관 10분 미만 답변이 대부분(25개 중 23개관)"
- "1개 기관당 1시간 5분 국감"
- "질의만하고 답변은 안 들어"

(법률소비자연맹 2015년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분석)

○ "정치감사"
- 정책 지향적이기 보다 인기 위주의 정치성 내지는 폭로성에 편중
- "몰아치기 감사"
- "세계유일"의 20일 시한의 국정감사
- "부실감사"
- 준비 부족
- 준비 부족의 원인은 능력부족?! 또는 자료부족?!
- "피감기관의 지속적 증가"
- 국정감사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최다 피감기관" 기록이 이어지고 있어 "부실감사"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남

○ "일회성"
-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부의 Feed back 기능 등의 처리 미흡

○ 근본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
- 위의 국정감사의 문제는 기술적 차원의 것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부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기도 함.
- 그러나 국정감사를 둘러싼 효용성 논란은 근본적으로 '독점의 정치'와 '대통령제의 내각제적 운용의 결과-정부여당 대(對) 야당 대립의 일상화'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근본적 대안과 기술적, 제도적 대안으로 나누어 보아야 함.
- 제도적 대안의 모색

5. 기간(期間)

○ "상시(常時) 국정감사"
- 국정감사의 시기를 조정 "몰아치기 국정감사"를 탈피하자는 주장
- 상임위별 자율일정에 따른 상시 국정감사로 위원회 중심의 국회운영을 강화하자는 것이기도 함.
- 정기 국정감사와 상시 국정감사를 병행하자는 주장도 있음.
- "과다 피감기관"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격년제 국정감사"를 제시하기도 함.

- "몰아치기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여야합의도 있었으나 실천되지는 않았음
- "2014년 6월 여야는 기존 정기국회 때 한차례 몰아서 하던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前)과 정기국회 기간으로 분리 실시하기로 합의"

-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 “이에 따라 올해(2014년) 국정감사를 '8월26일~9월4일', '10월1일~10월10일' 등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하고, 내년 이후 분리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하기로”

6. 국감대상 기관

-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
- 과다한 감사 기관의 선정도 적절한 수준으로의 하향 조정이 필요함
- 이 때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한데,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임
- 상시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정기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 정책형성기관과 정책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정책형성기관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기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사업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도 필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임.
-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임.

7. 자료와 전문성

- 상임위별 자료제출 공동요구와 데이터베이스화
- 국정 감사·조사 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 또는 감사 대상 기관의 성실한 서류 제출 및 삼사·조사 결과가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의 등 입법 활동에 반영되도록 함.
- 국정 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 지원 조직과 체계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국내외 교육 훈련 등도 병행되어야 함.
- 미국 회계감사원의 사례에서 보듯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감사관련 지원조직으로 감사원의 국회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개헌사항임.

○ **사후통제**

- 감사결과 사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정요구의 구체적 유형화를 통해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8. 근본적 대안의 모색

○ 첫째, '공동체(共同體) 정신'

- 정당이 달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역할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집단주의의 완화가 필요함.
- "헌법을 준수하고 ...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 합니다"라는 국회의원 선서에 충실하는 것이다.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과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의원'의 균형(均衡)이 요청됨.
- 이를 위해 '당론투표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당론투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당론투표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제로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임.

○ 둘째, 존중과 타협

- 같은 목적(국가발전) 다른 방법(진보적 vs. 보수적)이 정당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정치적 세력의 상호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고 타협 지향적이어야 함.
- 동시에 '합의 지향형 국회운영 관행'은 '제도화된 의사일정'으로 구체화되어야 함.

○ 셋째, 다수결 원칙

- 합의와 절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되 불가능할 때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민주주의는 다수결(多數決)이며, 그래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이 가능함.
- 나아가 협상과 표결처리를 위해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정치적 역할 가능성을 높여야 함.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와 정당 지도부의 정치력과 리더십

- 모든 것을 법으로 제도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법정화 되어 있지 않아서 국회와 정당이 지키지 못한 것은 없었음.
- 제도화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고 리더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발제 ②]

19대 국정감사를 통해 본 20대 국정감사

- '이벤트 국감' 폐지하고 '정책 국감'으로-

이 옥 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1. 제19대 국회, 국감 실태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국회는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
- 국정감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1988년 부활되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012.3.21)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함.(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가능)
-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
- 국정감사와 조사는 형식상 차이가 있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는 차이점을 찾기 힘듦

□ 숫자로 본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평균 감사일은 약 18일이며, 평균 총감사시간은 1천417시간이며, 감평균 피감기관은 642개임(【표 1】 참조).

【표 1】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통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 평균	18대 평균
감사시기	10.05~10.24	10.14~11.02	10.07~10.27	09.10~10.09	-	-
실제 감사일 수	18일	20일	16일	19일	18.3일	14.7일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 평균	18대 평균
총 감사시간	1,326시간	1,443시간	1,483시간	?	1,417	1,368시간
감사실시 기관 수	557개	628개	672개	712개	642개	508개
각 위원회 연 평균	35개	39개	40개	45개	39.8개	32개

※ 출처: 국회사무처의사국, 『국정감·조사통계자료집』

ㅇ 상임위별 피감기관 수를 살펴보면 교문위가 약 106개로 가장 많았고, 미방위 73개, 법사위 68개 순임. 위원회 평균 42개의 기관을 감사함(【표 2】 참고).

【표 2】 제19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감실시 기관 현황

구분 / 위원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국회운영위 (겸임 상임위원회)	7	8	8	8	7.8
법제사법위	61	70	71	72	68.5
정무위	46	47	56	44	48.2
기획재정위	25	25	28	28	26.5
외교통일위	29	38	34	30	32.8
국방위	52	52	53	52	52.3
교육문화체육관광위	-	104	98	118	106.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	71	72	77	73.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28	42	57	42.3
산업통상자원위	-	53	55	55	54.3
국토교통위	-	20	29	36	28.3
안전행정위	27	30	22	34	28.3
보건복지위	23	21	37	32	28.3
환경노동위	52	53	55	59	54.8
여성가족위 (겸임 상임위원회)	4	4	6	6	5.0
정보위 (겸임 상임위원회)	4	4	5	4	4.3
교육과학기술위	93	-	-	-	93

구분 / 위원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52	-	-	-	52
농림수산식품위	17	-	-	-	17
지식경제위	40	-	-	-	40
국토해양위	25	-	-	-	25
총계	557	628	671[1]	712	642 / 42.3

※ 출처: 국회사무처의사국, 『국정감·조사통계자료집』

○ 19대 국감 평균 증인 출석요구 수는 연간 3,895명임. 위원회별로는 안전행정위가 연 평균 2천19명으로 최다였고, 정무위 1천253명, 법사위 1천170명, 미방위 1천169명, 복지위 1천85명 순임.

【표 3】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및 출석률

구분 / 위원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출석/요구	%	출석/요구	%	출석/요구	%	출석/요구	%	출석/요구	%
국회운영위	71/78	91	65/70	92.8	67/71	94.4	66/72	91.7	269/291	92.4
법제사법위	223/223	100	287/287	100	284/285	99.6	374/375	99.7	1168/1170	99.8
정무위	300/318	94.3	317/322	98.4	307/314	97.8	289/299	96.7	1213/1253	96.8
기획재정위	177/180	98.3	170/174	97.7	161/162	99.4	175/178	98.3	683/694	98.4
외교통일위	138/139	99.2	130/144	90.2	138/143	96.5	127/129	98.4	533/555	96.0
국방위	170/174	97.7	207/216	95.8	168/170	98.8	179/179	100	724/739	97.9
교육문화체육관광위			371/371	100	304/313	97.1	339/351	96.6	1014/1035	97.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92/409	95.8	369/375	98.4	379/385	98.4	1140/1169	9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316/317	99.6	366/376	97.3	334/336	99.4	1016/1029	98.7
산업통상자원위			279/282	98.9	296/305	97	298/315	94.6	873/902	96.8
국토교통위			287/297	96.6	302/302	100	368/373	98.7	957/972	98.5
안전행정위	481/484	99.3	528/548	96.3	369/374	98.7	604/613	98.5	1982/2019	98.2

1) 안전행정위 대전특별시지방경찰청 감사 미실시

구분 / 위원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출석/요구	%	출석/요구	%	출석/요구	%	출석/요구	%	출석/요구	%
보 건 복 지 위	266/271	98.1	222/222	100	299/303	98.7	283/289	97.9	1070/1085	98.6
환 경 노 동 위	278/289	96.1	253/255	99.2	226/230	98.3	235/239	98.3	992/1013	97.9
여 성 가 족 위	15/15	100	22/23	95.6	19/20	95	22/22	100	78/80	97.5
정 보 위	10/10	100	10/10	100	17/18	94.4	18/18	100	55/56	98.2
교육과학기술위	478/483	98.9							478/483	98.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34/250	93.6							234/250	93.6
농림수산식품위	246/253	97.2							246/253	97.2
지 식 경 제 위	223/226	98.6							223/226	98.6
국 토 해 양 위	296/306	96.7							296/306	96.7
총계 (15,244/15,580)	3,606 β3,699	97.4	3,856 β3,947	97.6	3,692 β3,761	98.2	4,090 β4,173	98.0	3,811 β3,895	97.8

※ 출처: 국회사무처의사국, 『국정감·조사통계자료집』

o 19대 국감에서 민간인 증인 출석 요구 수는 평균 310명임. 한편, 공무원 증인은 평균 3천 895명임. 평균 증인 출석율은 82.5%임.

【표 4】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및 출석현황 (공직자/민간인 구분)

연도	구분 / 위원회	증인출석요구			증인출석			불출석	대리출석	자진출석
		공직자	민간인(일반인)	계	공직자	민간인(일반인)	계			
'12	국회운영	78	-	78	71	-	71	7	-	-
	법제사법	220	3	223	220	3	223	-	-	-
	정 무	255	63	318	251	49	300	18	-	-
	기획재정	171	9	180	171	6	177	3	-	-
	외교통상통일	134	5	139	134	4	138	1	-	-
	국 방	174	-	174	170	-	170	4	-	-
	행정안전	465	-	484	464	17	481	3	-	-
	교육과학기술	482	1	483	478	-	478	5	-	-

연도	구분 / 위원회	증인출석요구			증인출석			불출석	대리출석	자진출석
		공직자	민간인(일반인)	계	공직자	민간인(일반인)	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216	34	250	213	21	234	16	4	-
	농림수산식품	218	35	253	216	30	246	7	2	-
	지식경제	194	32	226	194	29	223	3	-	-
	보건복지	263	8	271	262	4	266	5	-	-
	환경노동	241	48	289	240	38	278	11	-	-
	국토해양	264	42	306	261	35	296	10	-	-
	정 보	10	-	10	10	-	10	-	-	-
	여성가족	13	2	15	13	2	15	-	-	-
	계	3,398	301	3,699	3368	238	3,606	93	6	-
'13	국회운영	70	-	70	65	-	65	5	-	-
	법제사법	283	4	287	283	4	287	-	-	-
	정 무	261	61	322	259	58	317	5	-	-
	기획재정	165	9	174	162	8	170	4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374	35	409	369	23	392	15	2	1
	교육문화체육관광	371	-	371	371	-	371	-	-	-
	외교통일	142	2	144	129	1	130	14	-	6
	국 방	215	1	216	206	1	207	9	-	-
	안전행정	493	55	548	490	38	528	16(2)	4	-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	293	24	317	293	23	316	1	-	-
	산업통상자원	234	48	282	234	45	279	3(2)	-	-
	보건복지	208	14	222	208	14	222	-	-	-
	환경노동	208	47	255	208	45	253	2(2)	-	-
	국토교통	248	49	297	247	40	287	10	-	-
	정 보	10	-	10	10	-	10	-	-	-
	여성가족	13	10	23	13	9	22	1	-	-
	계	3588	359	3,947	3547	309	3,856	85(6)	6	7
'14	국회운영	71	-	71	67	-	67	4	-	-

연도	구분 / 위원회	증인출석요구			증인출석			불출석	대리출석	자진출석
		공직자	민간인(일반인)	계	공직자	민간인(일반인)	계			
	법제사법	285	-	285	284	-	284	1	-	-
	정 무	256	58	314	255	52	307	7(1)	-	-
	기획재정	157	5	162	157	4	161	1	-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364	11	375	361	8	369	6	2	-
	교육문화체육관광	274	39	313	272	32	304	9(1)	-	-
	외교통일	143	-	143	138	-	138	5(6)	-	-
	국 방	158	12	170	157	11	168	2(3)	-	-
	안전행정	366	8	374	362	7	369	5	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337	39	376	337	29	366	10(2)	2	-
	산업통상자원	257	48	305	251	45	296	9	6	1
	보건복지	275	28	303	272	27	299	4	-	1
	환경노동	218	12	230	215	11	226	4(1)	2	-
	국토교통	268	34	302	268	34	302	0(1)	-	-
	정 보	18	-	18	17	-	17	1	-	-
	여성가족	13	7	20	13	6	19	1	1	-
	계	3,460	301	3,761	3,426	266	3,692	69(15)	14	7
'15	국회운영	72	-	72	66	-	66	6	-	-
	법제사법	375	-	375	374	-	374	1	-	-
	정 무	249	50	299	248	41	289	10	-	1
	기획재정	173	5	178	170	5	175	3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376	9	385	370	9	379	6	2	-
	교육문화체육관광	315	36	351	311	28	339	12	4	-
	외교통일	129	-	129	127	-	127	2	-	-
	국 방	174	5	179	174	5	179	-	-	-
	안전행정	603	10	613	595	9	604	9	1	-

연도	구분 / 위원회	증인출석요구			증인출석			불출석	대리출석	자진출석
		공직자	민간인(일반인)	계	공직자	민간인(일반인)	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314	22	336	314	20	334	2	-	-
	산업통상자원	249	66	315	241	57	298	17	4	-
	보건복지	265	24	289	265	18	283	6	1	1
	환경노동	223	16	239	220	15	235	4	3	-
	국토교통	344	29	373	344	24	368	5	-	-
	정보	17	1	18	17	1	18	-	-	-
	여성가족	15	7	22	15	7	22	-	-	-
	계	3,893	280	4,173	3,851	239	4,090	83	15	2
총계		14,339	1,241	15,580	14,192	1,052	15,244	330 (21)	41	16
19대 평균		3,584	310	3,895	3,548	263	3,811	82.5 (5.3)	10.3	4

※ 출처: 국회사무처의사국, 『국정감·조사통계자료집』

□ 증인신문 실태

o 일반증인은 피감기관 소속은 아니지만 국감조사법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임.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단 한 번의 신문기회를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심지어 증인을 채택한 의원조차도 누가 증인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음(〈참고 1〉).

<참고 1> 2014.10.8. 교문위 국감 회의록 중 일부

서울맹학교 교장 강현진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실 텐데, 한 번도 신문 안 하셨습니다.

서울맹학교 교장이신 강현진 증인, 안민석 위원 신청하셨는데?

○안민석 위원 보좌관이 했습니다.

○위원장 설훈 강현진 증인,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o 국감회의록을 살펴보면 증인 신문 중 상당수는 서면질의로도 답변이 가능한 단답형이거나 단순 사실 확인인 경우가 많았음(〈참고 2, 3〉).

<참고 2> 김상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교문위, 2014.10.24. 회의록 중)

○ 안민석 위원 증인으로 나오신 김상표 평창조직위 부위원장님.
○ 증인 김상표 예.
○ 안민석 위원 휘슬러라는 업체 들어 보셨어요?
○ 증인 김상표 휘슬러요?
○ 안민석 위원 휘슬러, 들어 보셨어요?
○ 증인 김상표 예, 독일……
○ 안민석 위원 김상표 증인께서는 그 회사하고 혹시 접촉해 본 적이 있으세요?
○ 증인 김상표 없습니다.

<참고 3> 김병목 한국식품연구원 선임연구원(미래창조, 2014.10.16. 국감 회의록 중)

○ 위원장 홍문종 추가질의와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끝났는데 김병목 식품연구원 참고인 발언 한 번도 안 하셨지요?
○ 참고인 김병목 예.
○ 위원장 홍문종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심심하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강길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김치의 세계화에 관해서 식품연구원에서 연구 좀 하고 있나요?
○ 참고인 김병목 그것은 김치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식품연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후략)

o 일반증인 채택 및 운영 행태도 문제지만 피감기관의 증인, 즉 기관증인의 증인채택제도도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시킴. 연간 수천 명의 공직자 및 기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답변율은 20%내외임.

o 비효율적인 국감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찮음. 19대 국회 국정감사 경비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교문위, 국토위 누락)은 13일간(공휴일 및 자료정리 기간 제외) 9억여 원, 2013년은 14일간 12억여 원, 2014년은 14일간 11억여 원을 집행했음.[2] 2012년 교문위와 국토위 경비를 누락시켜도 연평균 10억 5천여만 원을 지출했음. 한 해 평균 국감 기간이 14-15일 인 점을 감안하면 1일 동안 7- 8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임(【그림 1】 참조). 경비

2)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4. 2015); 바른사회시민회의, 19대 국회 국정감사 경비, 2014. 12

내역도 대부분이 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등 소모성예산임.

【그림 1】제19대 국회 국정감사 경비집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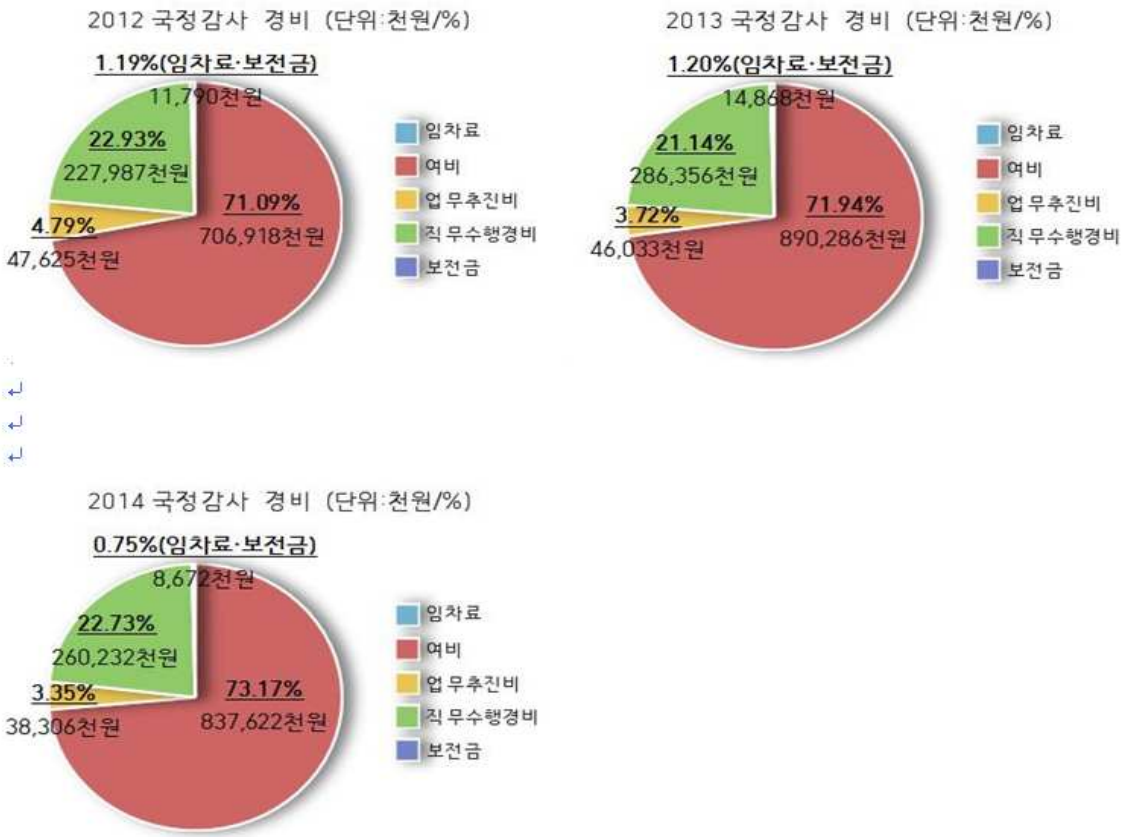

o 이렇듯 국정감사는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비용은 많이 드는 전형적인 고비율 저효용 구조로 고착화되었음

2. 반복되는 국감 구태(舊態)

o 19대 국회는 4년 내내 국감 구태의 반복 양상을 보였음. 첫째, 이번 국감은 파행의 연속이었음. 2015년 국정감사는 시작되는 첫날부터 파행이었음. 신동빈 롯데회장의 증인 출석문제를 놓고 정무위원회가 파행했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한 공방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대부분

의 시간을 허비했음. 국감이 내내 메르스 사태 등 증인 채택 문제 또는 증인의 과거 발언 및 신변 문제로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을 거듭했음

ㅇ 둘째, 무분별한 일반 증인 채택 행태임. 과거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요구 및 신문행태를 보면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증인을 무더기로 출석 시킨 후 한마디의 신문도 없이 돌려보낸 증인이 상당수 있었음. 몇 초의 증언을 위해 하루 종일 기다린 증인, 상식이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밤늦게 까지 기다린 증인, 서면 질의로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감장으로 불러 증인들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았음

ㅇ 셋째, 막말 및 인신공격 등 정치권의 해묵은 관행도 어김없이 반복됨.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김모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를 향해 "얼마 안 있으면 물러날 것 같은데, 법인세라도 정상화하는 게 가장 큰 업적이 되지 않겠느냐"며 인신공격형 발언을 서슴지 않았음. 또한 박모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얼굴은 뻘게지셔가지고..."라며 국감취지와는 무관한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김 모의원은 "도대체 머리로 일을 하는지 발가락으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피감기관장에 모욕을 주는 듯안 발언을 했음. 환경노동위원회 장모의원은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의 관용차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기억 못 하시냐? 그 정도 기억력이 없으시면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인격 모욕적 발언을 했음. 이상의 예는 일부에 지나지 않음

ㅇ 넷째, 성급한 국감 준비로 행정부의 실책을 잘 못 지적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음. 구체적 사례는【표 5】와 같음.

【표 5】국감 중 잘못된 내용을 지적한 사례

유 형	소속/의원	주 요 내 용	비 고
의도적 허위 폭로	**새정연 도o의원 (교문위)**	◦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고 있다며 근거로 교육부 문건* 공개** ➤(경향1면, 9.10) 보도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출발은 '박 대통령 지시 *「대통령 지시사항(역사교과서 관련 제도개선) 실적 제출」 제목의 문건	경향신문에 정정보도 요구 및 관련 해명자료 배포(교육부),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도 11일 춘추관에서 관련 사실 설명 ➪ 오마이뉴스에 기사화

유 형	소속/의원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 문건에는 국정화 관련 내용이 없음에도, 도종환 의원이 **同 자료를 국정화의 근거로 임의 유추하여 폭로식으로 문제제기** : (서용교, 강은희 의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대통령 지시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교과서 국정화는 장관 고시로 결정되는 것임을 지적	
		◦ 문화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대상 선정에서 야권 성향 작가 배제를 요구했고, 심의위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직접 결과를 조정한 의혹이 있다고 예술위 자료 근거로 지적 - 일례로, 이윤택 작가가 희곡 심사 1위였음에도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문인'이라는 사유로 배제되었다고 주장 ➤(한겨레 1면 톱, 9.11) 보도 : 정부, 문학창작심사 개입 '유신검열' 되살아나나 이윤택 연출가는 국립극단 및 명동예술극장 등 다수 기관에서 작품 제작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차원이었다고 함 *'14~'15년 동안 총 6회 약 15억원을 지원받음 : (한선교 의원) 시민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작품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우려가 있다면 지원 철회가 마땅. 특정성향이 있는 사람의 작품을 일부러 뺀 것이 아니고 작품내용에 '군인 비하 내용'이 담겨있어 작품이 선정되기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 *박창식 의원도 같은 취지로 野 공세에 반박 예정	*해명자료 배포 예정 (예술위)
사실관계 잘못	**새누리 김oo 의원**	◦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의 월 임대료가 최고 186만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임대료 산정보고서를 토대로	보도 해명자료 배포 ➪ 매경닷컴 기사화 (국토부)

유 형	소속/의원	주 요 내 용	비 고
	(국토위)	지적 ➤(연합, 9.11) 보도 : 용산 뉴스테이 84㎡ 월세 최고 186만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는 확전된 바도 없고, 임대료 역시 책정된 바가 없음	
사실관계 잘못	새정연 김oo 의원 (국토위)	◦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100억원대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국토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지적 ➤(연합, 9.11) 보도 : 국토부 산하기관, 추석에도 체불임금 미지급 관련 자료는 지난해 추석명절을 대비해 체불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로,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체불한 하도급 대금이 아니라 공공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와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재하도급을 하는 하청업체들이 체불한 내역임 국토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위반업체에게 대금지급을 독려하려 했던 것이고, 그 결과 미지급됐던 대금 모두를 추석 전후에 지급하도록 했음	연합 해당기자에 항의 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 해명자료로 배포 ➪ 머니투데이 기사화 (국토부)
사실관계 잘못	새누리 이oo 의원 (안행위)	◦ 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바로일터' 사용 공무원이 0.95%뿐이라며 예산 낭비 지적 ➤(동아, 9.11) 보도 : 38억 들인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 공무원은 0.95%뿐 同시스템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현장근무자, 이동·출장자의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공무원 101만명을 모수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왜곡임 *현재 바로일터 시스템은 210개 기관 6,600개 업무전용폰에 설치, 현장근무자 대부분인 약2만명이 사용 중	보도 해명자료 배포 ➪ 디지털타임스 기사화 (행자부)
사실관계 잘못	새정연 유oo	◦ 세월호 책임 공무원 징계가 감경되었다며 '해수부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주장	보도 해명자료 배포 ➪ 뉴스1/국민 기사화

유 형	소속/의원	주 요 내 용	비 고
	의원 (농해수위)	➤(머니투데이, 9.11) 보도 : 정부, 세월호 참사 책임 공무원 징계 감경…"제식구 감싸기" 당사자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대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추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공무원의 징계수위가 감경되어 원칙대로 대응한 것	(해수부)
내 마음대로	새정연 김oo위원장 (농해수위)	◦ 국감 시 3건의 결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채택하자고 갑자기 제안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결의안,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 촉구 결의안 등) '국정 수행 감사'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 갑작스럽게 제안하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 를 곤혹스럽게 함	농식품부 차관이 안효대 여당 간사와 면담, 정부 입장에서는 결의안 채택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당 차원에서 반대해 달라고 요청 ➡ 논의안 하고 국감 종료
부적절 행위	새정연 서o의원 (법사위)	자신은 국감장에서 검찰에게 '사이버 감청' 등과 관련해 호통을 치고 검찰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으면서, 같은 당 윤후덕 의원(딸 취업청탁 관련)을 뇌물죄로 고발한 변호인에게 전화해 "정리를 좀 하자. 사실관계가 맞으면 고발을 취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사실상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동아), 국회의원으로서, 그것도 국감 중에 부적절한 논란 야기	

o 다섯째, 정책 국감보다 '이목 끌기'에 집중함. 환노위 국감 때 생태계의 파괴 주요 요인으로 뉴트리아가 등장한함.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10대들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셀프성형 기구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이 셀프성형 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코뽕, 얼굴밴드, 쌍커풀 안경 등을 착용하고 등장함. 이 보좌관의 의원은 순식간에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보좌관이라는 직업이 신종 '극한직업'으로 등극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짐. 경찰청 국감에서 한 야당 의원은 “구파발 총기사고는 탄약관리지침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이자 명백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하며 “모형 총기를 갖다 뒀으니 주머니에서 빼 직접 총을 쏘는 시연을 해 보라”고 강 청장에게 요구함. 당황한 강 청장이 시연했고 이후 경찰조직은 크게 술렁거렸음.

o 여섯째, 국감 중 의원들의 외유와 “일탈”도 반복되는 구태임. 당초 야당의 공격수로 알려진 의원이 국감 중 실종(?)되자 한 언론이 추적하여 보도한 결과,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인 때 국회의장과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협상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것임. 정 의장의 공식 순방에는 야당 의원 외에도 3명의 의원이 있었음. 국내에 있으면서도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도 있고, 잠깐 출석도장을 찍은 후 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의원, 국감장을 마지못해 지키지만 스마트폰을 검색하거나 소설책을 읽는 의원 등 천태만상임. 기타 여당은 무조건적인 정부 방어, 야당은 정치공세에 치우치는 행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국감 구태임

3. 국감 뒤집어 보기:[3)]

□ 국회 측 애로사항

o 구태 국감의 원인은 자료제공 부실 등 피감기관에도 책임이 있지만 감사 주체인 국회도 책임이 있음. 감사주체와 피감기관의 비대칭적 인력구조임. 감사주체인 국회는 국회의원 300여명, 국회 보좌진(운전업무 담당하는 수행비서, 전화응대 등 행정비서 포함) 2000여명, 각 의원실 인턴 2명씩 900명을 합하면 3000여명 정도임. 반면 피감기관은 행정, 사법부 등 공무원 등 100만 정도임. 또한 보좌관의 평균 근속연수는 매회 국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4년 정도임. 반면 행정부 공무원들은 20대 후반에 공무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평생을 국감을 받으면서 노하우를 축적함.

o 또한 보좌관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전무한 반면 공무원은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기본교육, 전문교육, 글로벌역량, 창조교육, 사이버교육 등 평생동안 전문교육을 받으며 해외 연수 기회도 가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좌관은 직무관련 교육은 고사하고 교재도 없으며 행정부는 일찌감치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까지 만들어 체계적으로 국감에 대응하고 있음

3) 서인석, 『다시 쓰는 국정감사 실무매뉴얼』, 심인: 서울, 2012, pp. 34-63 요약 및 인용.

o 세 번째는 행정부의 자료제출 기피 행태임. 국정감사는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료요구를 통해 이루어짐. 현장에서 임시사무실을 차려 놓고 다방면의 자료를 들추어 보는 감사원 감사와는 달리 서면자료에만 의존함. 그렇다 보니 자료 제출 거부 및 지연, 엉뚱한 자료제출, 핵심만 뺀 부분제출 등을 통해 국회자료요구권을 무색하게 함. 이러한 행정부의 행태에 대해 처벌규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이 있지만 유명무실함. 즉,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지만 위원회 의결사항이고 다수당인 여당이 행정부의 방패 역할을 하면서 의결을 거부하여 지금까지 자료제출 거부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거의 없음

o 네 번째는 각 종 NG단체들의 국감 우수의원상 남발임. 일부 시민단체에서 각 위원회별 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데 어림잡아 70여명임. 몇 개 단체가 선정을 하면 국회의원 2/3가 수상자임. 우수의원상은 의정활동에 끼워 넣기 좋은 명분임. 그렇다 보니 의원들 간의 역할 분담이나 협의를 통한 효율적 감사보다는 서로가 순위를 다투는 경쟁자로 전락하게 되고 특종경쟁에 내몰림.

3. 예상되는 20대 국감 이슈들

□ 예고된 정치감사

o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김영란법개정, 법인세인상, 사드배치 문제, 북한 핵 실험,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인양, 전기요금누진제 개선, 청년수당, 가습기 살균제 후속조치, 사이버테러 방지법, 4대강 사업 등 상임위별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초래할 수 있는 쟁점사항이 많음. 이러한 쟁점사항으로 인해 제20대 국감도 정책감사보다는 정치감사의 구태국감을 예고하고 있음(【표 6】 참고).

【표 6】2016년 국정감사 위원회별 쟁점사항

위원회	쟁 점 사 항
운영위	-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법사위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정무위	- 경제민주화 법안, 해운조선 구조조정, 김영란법 개정,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정위	- 법입세 인상, 해운조선 구조조정, 가계부채, 김영란법
외통위	- 북한 핵 억제 대책, 사드배치 외교적 후폭풍, 한일 위안부 합의
국방위	- 사드배치지역 선정, 북핵 대비책, 현역병 부족 대책
안행위	- 지방세제개편안, 지진 안전대책
교문위	-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미방위	- 가계통신비 경감, 공영방송 지배구조,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 단말기 유통법
농해수위	- 세월호 인양, 쌀가격 안정화 대책
산업위	-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원전 안전대책
복지위	- 원격의료, 청년수당, 후진성 질병 발생 관련
환노위	- 노동시장 이중화 개선책, 원전 안전대책, 가습기 살균제 후속조치, 4대강 사업
국토위	- 전월세 상한제, 국민연금 공공주택 투자
정보위	- 사이버테러방지법, 북한 동향
여성위	- 여성가족부 '화해·치유재단'

○ 20대 국회 국감 위원회별 민간인 증인 채택을 살펴보면, 9월 21일 현재 1천5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 증인요구명단을 제출한 위원회 중 가장 많은 증인을 채택한 위원회는 보건복지위로 316명임. 법사위로 311명, 정무위 274명, 산자위 240명, 외교위 166명 순임(【표 7】 참고).

【표 7】 2016년 국정감사 위원회별 민간인 증인 수

(2016.09.21.)

연번	위원회명	기관증인	일반증인	참고인	총계	비고
1	국회운영	-	-	-	-	미제출
2	법제사법	311	-	-	311	일반증인 미정
3	정무	256	15	3	274	
4	기획재정	168	-	-	168	일반증인 미정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20	14	34	기관증인 미정
6	교육문화체육관광	-	-	-	-	미제출
7	외교통일	152	4	10	166	

연번	위원회명	기관증인	일반증인	참고인	총계	비고
8	국방	-	4	-	4	
9	안전행정	-	-	-	-	미제출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	-	-	미제출
11	산업통상자원	240			240	일반증인 미정
12	보건복지	316	-	-	316	일반증인 미정
13	환경노동	-	-	-	-	미제출
14	국토교통	-	-	-	-	미제출
15	여성가족	-	-	-	-	미제출
계		1,443	43	27	1,513	

※ 출처: 국회 위원회별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ㅇ 20대 국회 국감 위원회별 피감기관을 보면, 총 650개 기관으로 미방위가 78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법사위 72개, 교문위 61개, 환노위 58개, 산자위 56개 순임(【표 8】 참고).

【표 8】 2016년 국정감사 일정 및 피감사기관 현황

연번	위원회명	기간	일수	피감사기관 수
1	국회운영	2016.10.20.~10.21.	2	8
2	법제사법	2016.09.26.~10.15.	20	72
3	정무	2016.09.26.~10.15.	20	44
4	기획재정	2016.09.26.~10.15.	20	28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2016.09.26.~10.15.	20	78
6	교육문화체육관광	2016.09.26.~10.15.	20	61
7	외교통일	2016.09.26.~10.15.	20	41
8	국방	2016.09.26.~10.15.	20	53
9	안전행정	2016.09.26.~10.15.	20	49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016.09.26.~10.14.	19	35
11	산업통상자원	2016.09.26.~10.15.	20	56
12	보건복지	2016.09.26.~10.15.	20	32

연번	위원회명	기간	일수	피감사기관 수
13	환경노동	2016.09.26.~10.15.	20	58
14	국토교통	2016.09.26.~10.15.	20	29
15	여성가족	2016.10.17.~10.18.	2	6
총계				650

※ 출처: 국회 위원회별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 반복되는 개선방안

o 무분별한 증인 채택 제도 개선. 대안으로 '증인신청 실명제'가 거론됨. 증인을 신청한 의원은 이름을 걸고 증인채택 및 신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함.

o 국회자료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과 상충.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상 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그리고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물론 직무상 비밀은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직무상 비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가 없음.[4)]

o 셋째, 국회의원의 국감 특권 내려놓기임. 국감 구태의 상당부분은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다. 국감장에서 일부 의원들은 증인 및 참고인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증인, 참고인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호통을 일삼음. 해명이나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음. 1분이 귀중한 기업인 증인 및 일반 증인을 하루 종일 출석시키며 신문기회 조차 주지 않음. 최근 편법적인 정치자금 동원 수단이었던 출판기념회가 사라진 대신 기업 증인 채택과 빼주기로 각 종 잇속을 챙기는 의원들도 있다고 함.

o 넷째,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 강화임. 국정감조사법에 의하면 정부는 시정요구를 받을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처리시한이 없고 사후 감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실무상으로 국정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정부에 이송하고 있으나 분류기준도 모호하고 실효성도 없음. 미흡한 처리결과에 대한 제재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국감 지적사항이 부처 추진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정책반영이 지지부진해 지는 일이 없도록 총리실이 부처별 추진사항을

4) 김형준, 「국민으로부터 국정감사를 감사 받아라」,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자료집, 2013. 10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

4. 개선방안

□ 상시 국감제도 도입

o 매년 반복되는 국감의 고질적 문제점-무분별한 증인채택, 호통치기, 몰아치기, 부실/졸속 국감, 폭로성 국감, 정치 국감, 무리한 자료요구, 백화점식 감사, 사후결과 처리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시 국감체제로 가는 것임

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1항) 개정: "국정감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1988년 부활되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012.3.21)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는데, 상시국감을 위해서는 개정해야함.

o 상시국감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상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국감을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책 감사가 이루어 질 것임

o 상시국감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상임위 차원의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의원 개인이 부각되기 보다는 해당 상임위의 심층적인 국감 내용이나 결과가 부각되어야 함

□ 국정조사제도 활용

o 현행 국정감사에서 대두되는 "특정의 국정사안"에 대해서는 국정 조사(specified investigation)제도 활용. 국정조사는 1) 특정한 국정사안을 대상으로 함 2) 불특정기간에 부정기적으로 함 3)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실시

o 국정조사는 특정의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실시되기 보다는 국민적 비리/의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의 차원에서 실시됨. 국정조사는 비리, 의혹 규정이라는 조사 기능에 초점.

o 따라서 국정감사제도는 폐지하고 현행 국정조사의 취지를 살려 상시국감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근원적인 대책이 될 것임.

〈'20대 국회에 바란다' 시리즈②〉

'정치감사' 예고된 20대 첫 국정감사,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토 론

[토론 ①]

폐지와 개선의 기로에 선 국정감사

-'정치감사', '기업감사' 하지 말고 국정감사를 하라

김 인 영
한림대 교수

국정감사는 국회가 가진 강력한 행정부 감시 및 통제 수단으로서 유신헌법 제정 당시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폐지되었다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헌법 개정과 함께 부활한 독재 감시의 상징적 제도이다. 폐지 된지 16년 만에 다시 살아난 88년의 제13대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는 삼청교육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80년 언론통폐합 등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의 중요한 자유 탄압 사건들을 다루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와 함께 부활한 국정감사는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폐지냐 개선이냐의 기로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산하기관 '길들이기'식의 무리한 자료요구와 대규모 행정부 간부 출석 요구, 국감 사안으로 보기 힘든 정치적 쟁점을 두고 여야가 싸우느라 파행을 겪으며, 증인·참고인에 대한 호통 등 비인격적 대우, 알맹이 없이 관련기관을 순시하는 식의 수박 겉핥기의 국정감사 때문에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선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감사'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박명호 교수님은 발제문을 통해 '정치 감사' 논란은 우리의 권력구조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제이지만 내각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정부여당 vs, 야당 대립이 일상화 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의한다. 또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여론조사에서 "성과 있다" 응답이 16%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과 함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대하여는 수긍하면서도 전제 조건이 되고 있는 '국정운영의 동반자'와 '견제와 균형'에 대한 공통인식의 확립이 현재의 권력구조에서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특히 정치인과 정치가 스스로 바뀌기를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이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권 때리기에 근거한 무차별 폭로와 이로 인한 여야 대치와 파행으로 점철된다면 진정 국정감사를 통한 행정부 견제의 의미는 상실될 것이다. 이렇게 20대 국회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국정감사라면 이제는 '발전적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2015년 국정감사에 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올해(2015년)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언어폭력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다. 의원들은 말도 안되는 호통치기, 악의적 비아냥 등으로 울분에 찬 사적 감정을 공적 자리에서 여과 없이 드러냈다. '선량'이라는 국회의원의 호칭에 어울리지 않은 감정 분출이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 의원이 대기업 조세정책과 노동개혁 추진에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 공무원들이 재벌의 하수인이 되어서 재벌들의 소원만 들어준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따지겠다고 불러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이 축구시합을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초등학교 학생 수준의 질문을 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판결에 관한 공방이 이어졌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상대 당(黨) 대표를 흠집 내는 일이라면 범법, 탈법도 무시하는 모습이었다.

증인소환 제도 역시 문제가 많았다. 국정감사는 본래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정부 정책을 감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정'(國政)감사이지 '기업'(企業)감사가 아니다. 때문에 굳이 기업인들을 불러 야단칠 필요가 없음에도 기업인 증인소환은 갈수록 늘었다. 17대 국회는 52명, 18대 77명, 19대 124명으로 기업 CE소환은 많아졌다."

이러한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박명호 교수님의 발제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내용은 그 의의가 매우 크며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 진심어린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발전적 폐지'를 통한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정감사의 존폐를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OECD 회원국 의회는 국정조사 기능은 수행하지만 대한민국 국회 방식의 국정감사, 즉 시찰과 호통 위주의 감사는 하고 있지 않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국정감사 방식이라는 것이다. 경찰 순찰 또는 권위주의 시절의 대통령 연두 순시를 방불케 하는 현장 시찰 또는 아무 지적사항 없이 의무적으로 돌아다니는 경찰 순찰식의 시찰은 도리어 행정부의 준비 때문에 대민 서비스를 마비시키고 정책 집행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나아가 국정감사로부터 이후 각 부처 예산심의까지 고위·중견급 핵심 행정 공무원들이 3개월 정도를 입법부 국회의 일에 매달리게 되므로 국정의 공백이 심각하고 이를 방조하는 것은 소위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 나아가 초선의원이 대다수인 국회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데

졸속·판박이 국정감사에 공무원을 하는 일 없이 대기시키는 것은 국력 낭비라는 것이다.

둘째, 국정감사가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용) 정치 감사' '민간 기업 감사'로 변질되어 버렸다.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치공방의 전투장이 되고 대선 전초전이 되는 식의 감사로 야당의 들추기와 여당의 감싸기, 그리고 행정부의 숨기기가 전부가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국정감사의 본래의 취지가 아니므로 발전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 개정 사항이라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지만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와 1년 상시 행정부를 감사하고 국회의 상임위는 이를 보고 받는 방향으로 "국정감사 폐지와 함께 감사원 감사 국회보고"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회의 '벼락 감사', '호통 감사', '말도 안 되는 코메디 감사', 'TV 뉴스용 보여주기 감사' '정치 감사'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악화시킬 뿐이고, 국회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oversight)하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국민을 화나게 한다면 없애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라는 생각이다.

넷째,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 등 다양한 정부 감시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는 민주화된 시대에 국회의 행정부 독주 견제의 논리는 더 이상 국정감사 존재의 이론적 근거로 미흡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라면 모를까 민주화 30년이 되었는데 그것도 아시아에서는 최고 민주주의를 운용하고 있는데 더 이상 행정부 독주 때문에 국정감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61조는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대한 정당성은 헌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본다면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미국이나 영국처럼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프랑스나 일본처럼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이다. 행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이 취약하고 특히 재정 운용에 대한 사후 통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부에 비하여 입법부는 정보가 적고 정확하지 않아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정책 대안 마련과 입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다하고 존속하려면 앞서 언급한 정보비대칭성 완화와 재정에 대한 사후통제 기능 강화 그리고 행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과 부패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의 개선도 가능하다.

가장 좋은 대안은 첫째, 매년 동일한 내용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보완에 집중하고, 둘째, 피감사 기관이 많으므로 모든 기관을 일정한 기간에 하지 않고 현장 감사는 2년에 한 차례씩 하고 현장 감사에서 빠진 기관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연중 청문회나 사안에 따라서는 수시로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러 정책을 따지고 재정 운용에 대하여 감독하면 될 것이다. 국정감사를 대신하는 연중 상시청문회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은 이미 과거에도 많은 학자들과 평론가들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갈수록 국정감사는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고 그 부작용이 행정부 마비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제 현실은 국정감사의 '발전적 폐지'를 논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는 이제 '폐지와 개선'의 기로에 처해 있다. 국회에 불려가 할 일 없이 기다리다가 국회의원들의 생색내기 질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오느냐가 관건이 되어버린 국정감사이다. 기업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하여 비인간적으로 윽박지르고 혼내는 국회의 행태는 정치인들이 기업인 앞에서 폼을 잡고 싶어 하는 스노비즘(snobbism)의 모습일 뿐이다. 올해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지만 내년의 대선 전초전으로 정책 대안 제시 없이 행정부 깎아 내리기와 흠집 내기만 있는 국정감사라면 국정감사의 존재의 이유(raison d'être) 조차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9월 19일까지 5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감 증인 중 기업인 증인은 84명이라고 한다.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라는 명칭 꼼수로 부르는 인원을 합한다면 그 숫자는 더 커질 것이다. 야당이 CEO급 37명을 부르겠다는 것을 보면 국정감사를 마치 기업감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작년에는 기업 대표를 불러 12시간 기다리게 하고 30초 답변하게 하고, 재작년 2014년에는 6시간 56분 대기하다가 7초간 답변하고 돌아가게 하는 비인격적인 국감이 올해도 되풀이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명을 듣겠다고 증인을 불렀으면 설명을 들어야지 자기들 말만하고 끝내는 국감이라면 더 이상 존재해야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국회에 불려가 할 일 없이 기다리다가 국회의원들의 젠체하기와 생색내기 질문에 비인간적인 고통을 당하고 오느냐가 관건이 되어버린 국정감사는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려우므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정감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토론②]

'정치감사' 예고된 20대 첫 국정감사,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최 창 렬
용인대 교수

1. 근거조항

■ 헌법 제61조

1항

-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관련법

- 헌법 61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헌헌법에서 최초 규정
- 1972년 유신 헌법 폐지
- 1980년 헌법에 국정조사권 명시
- 1987년 헌법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명시

2. 의미

- 국정전반에 관한 포괄적 조사활동
- 국정·행정권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비판·견제 기능 수행
- 국회의 지위와 국정통제 기능의 강화....행정부 우위의 권력구조에 대한 균형, 입법·예산 심사 기능, 국정통제 기능

-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
-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 위한 필요한 자료·정보 확보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

- 시기, 기간, 대상, 통제 기능의 정도 차이
- 행정권 행사에 대한 사전적 통제 기능(행정부는 국정감사를 의식하여 행정의 합법성, 민주성 제고)
- 국정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와 자료 공개, 국정조사보다 많은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국민의 국정에 관한 알 권리 제고)
- 국감은 국회의 예산의결권과 연계되어 있음(예산안 심의 의결 위한 선행 기능, 국감제도의 재정 통제 기능)

※ 국정조사는 본회의 승인 필요, 따라서 국정조사 제도가 실제로 국회의 국정통제수단으로 활성화되기 어렵다. 국정감사제도의 국정통제기능은 중요한 의미

3. 범위

■ **위원회 대상 선정 기관**

-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 특별시·광역시·도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감사)

■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

-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 외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 외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
-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기관

- 입법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행정에 관한 사항, 사업행정에 관한 사항.
- 국회가 행정작용을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감사를 할 수 없다.
- 서류 제출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 받은 자 또는 기관은 반드시 응해야.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임위 의결로 증인에 대하여 지정 장소까지 동행 명령

4. 문제점

■ 과다한 국정감사대상기관
- 한 위원회가 하루에 여러 기관 동시 감사
- 졸속·부실·일과성 감사 우려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 사업에 한함.
- 기초자치단체도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 포함. 본회의 의결로 지방행정기관 감사 편중. 의원들의 영향력 과시 (이는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헌법 정신에 반할 수 있다.)

■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
- 피감기관의 통상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됨.
-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갈등 요인
-자료준비 소요 비용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

■ 증인채택문제
- 증인채택 둘러 싼 여야 이견, 국감 파행
- 출석 요구 경우에 증인 불출석 문제
- 증인의 불출석·위증 경우 실형 확정 경우 없음.
- 불출석 증인과 위증 증인에 대하여 처벌 강화할 필요.

5. 본래의 취지와 문제점

■ 국회의 입법의도와 부합하게 행정부가 정책사업을 구상해서 집행했는지 여부 판단하는 정책감사.
- 정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관리 되느지 여부의 행정관리 감사.
- 그 과정이 적법한 양식에 의해 처리되는지 여부의 위법성 감사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 실상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대안제시 등의 정책지향감사 보다는 위법성 감사에 치중
- 정치적 비리 문제에 관련된 감사, 정치적 목적
- 국감이 인기영합주의와 정책과 거리가 먼 감사.

■ 감사 결과 사후 처리 문제
- 감사 결과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되어 예산 및 각종 법안 심의에 반영되어야 국감 취

지에 부합

- 그러나 감사결과보고서 지연 처리 때문에 그 해 예산 및 각종 법안 심의 시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지적사항에 대해 정부·해당 기관이 시정 등의 조치 지연 또는 회피)
- 국회의원 스스로가 처리상황에 대해 관심 적음.
-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해 처리시한 및 사후 감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6. 국감폐지론

- 제헌헌법에 최초로 국정감사권 규정은 국정조사에 대한 오해라는 인식
- 외국의 입법례가 없음
-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자율성 침해, 권력분립 위배
- 국회는 국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이지, 직접 행정에 대하여 감사 기능 수행은 부당
- 현행 헌법상 행정부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감사 기능 수행은 아님
- 국회의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비판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국정조사권 발동으로 대체
- 대부분 정치공세, 국감 전후 2개월간 국정마비(정책감사 아닌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정치감사)
- 입법·예산 심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 획득이라는 감사의 순기능 보다 정쟁과 정치공세로 전락하는 역기능이 우세
- 본회의 대정부 질문, 예결위 정책질의와 사실상 중첩

7. 국감폐지론에 대한 반론

- 제1공화국에서 정례적 일반 국정감사와 특정한 국정 사안이 이원화
- 외국의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 헌법(original constitution)
- 제도의 폐지가 존치보다 이익이 클 때, 폐지론이 정당화될 수 있음. 문제점과 병폐가 국정 통제의 순기능보다 크다고 할 수 없음
- 헌법 개정에 의해 국감 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관계법률의 개정을 통해 개선 가능
- 유신 헌법 당시 국감 폐지, 1987년 9차 개헌 때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결단
- 행정부의 우위에 대한 사실상의 권한이 약한 입법부의 국정 통제 기능의 강화를 제도화
- 국회의 통제 기능 중 가장 실효성이 큰 '불가결한 제도적 장치'
- 국정조사와는 다른 독자적인 존재의미와 제도적 의의(국정조사권 현실정치에서 발동되기 쉽지 않음)

- 사전적 통제수단으로서 국정 전반에 관한 포괄적 조사활동.

8. 개선책

- 대상기관 축소, 과다한 서류 제출 해소책
- 증인채택방법의 개선,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검증
-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연계 방안.
- 국회의 상시감사체제 도입은 상시국회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
-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에 이관할 필요
- 지자체 제외 방안. 국가의 위임사무에 한한다고 하지만 실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까지 이루어짐(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경계도 사안에 따라 애매한 경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중앙부처에 의한 감사, 지방의회 감사, 자체감사,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등 과도한 중복감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훼손)
-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

■ 그 밖의 보완책

- 국회가 정부로 보내는 처리요구서에 어느 의원이 시정처리를 요구했는지 밝힐 '개선요구실명제'
- 국감 진행 순서에 '추진실적 보고' 항목 신설
-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평가와 기관장으로 하여금 다음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지적사항의 해결에 관심 기울임
- 국정감사 사후 검증제 (행정부의 시정처리 결과 분석·평가). 소관 상임위 주관으로 다음 국감 때까지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점검 의무화
- 현재 국회의장 결재 받는 내부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검증제의 법적 근거 명확하게 할 필요
- 위원회의 전문인력 보강

9.국감의 정치적 의미

- 여대야소의 경우는 국회의 실질적 통제기능
- 내각제로 개헌할 경우 국감 유지 불필요. 의회정부로서 대통령제와는 기본 권력구조가 다름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으로 상시 행정부 감시. 권력분립이 운영 원리인 대통령제와는 다름
-감사원의 국회 이관, 감사원의 회계 검사 기능과 직무감찰기능에서 회계검사기능 국회 이관(현행 국정감사권이 국정조사권과 달리, 국회의 예산 의결권과 연계, 예산안의 심의 의결의 선행기능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회계감사권을 국회에 이양하면 국감 폐지 고려해 볼 만)

10. 결론

- 국감이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하는 정치적 투쟁수단의 의미가 아님.
- 국감은 사회적 비용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행정통제효과를 가져올 때 정착될 수 있다. (현행 국감은 제도적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 현재는 행정부 대 입법부의 견제구도 보다 정부여당 대 야당의 대결 구도 하에서 상당 부분 정쟁적 요소 강한 게 사실
- 일과성 정치행사로 여기는 국회의원의 인식과 감사현장만 모면하려는 피감기관의 적당주의의 결합이 국감의 존립을 의심받게 만든 요인이기도 함.
- 국감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감의 존립은 나름대로 역사적 의의와 필요성을 담지.
- 그러나 현행의 운영대로 간다면 역기능이 순기능을 압도할 수 있다.
- 분기에 나눠서 국감 실시 등의 방식은 반드시 고려할 필요.
- 사후검증강화
- 정책감사 지향. 정치감사를 지양할 법적 근거 마련.
- 정당들의 인식(정치문화)

■ 운영의 묘를 통한 본래 취지 살려야 함.

- 국감을 세계에 유례없는 한국적 입법 견제 모형으로 발전시킬 제도적 연구 필요(제도적 독자성과 헌정사적 의의를 살리는 방안 모색)
-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활용하여 기관별로 국정감사의 감사 항목에 대한 엄격한 제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을 의제로 채택하지 않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4길 38(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3층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